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복무기간의 산정) 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의 기산일은 복무형 지역의사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로 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제5호에서 “휴직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입원이나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통틀어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기간
2. 육아·질병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 기간
3. 국내·외 연구·교육기관에서 본인의 직무와 무관한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그 연구 기간 또는 연수 기간
4. 그 밖에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기간으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제3조(전공의 수련)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복무형 지역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문과목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전문과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으로 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복무형 지역 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련병원 소재지의 범위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제4조(의무복무지역의 변경 신청 및 승인) ① 복무형 지역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복무지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동일 가족관계등록부 안에서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한다)이 중대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해당 지역 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의무복무기관의 폐업 또는 감원, 진료가능한 환자 수의 감소 등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유행을 방지하거나, 중증·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기 위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의무복무지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도

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무복무지역 변경 신청서

2. 진단서 등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무복무지역의 변경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신청인의 의무복무지역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변경 신청 사유의 타당성 및 불가피성

2. 기존 의무복무지역의 의료인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

3. 변경 후 희망 복무 지역의 의료인력 수급 상황 및 추가 인력 배치의 필요성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의무복무지역의 변경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신청인의 의무복무지역을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 및 지정하려고 하는 의무복무지역의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변경 승인 여부 및 제4항에 따라 다시 지정된 의무복무지역을 신청인 및 신청인의 의무복무지역 관할 시·도지사 및 다시 지정된 의무복무지역 관할 시·도지사(변경 신청을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변경 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지체없이 제4항에 따라 다시 지정된 의무복무지역에서 복무를 시작해야 한다. 이 경우 변

경 승인을 통보받은 날부터 다시 지정된 의무복무지역에서 복무를 시작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형지역의사의 채용 및 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의료수요, 복무형 지역 의사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계약형 지역 의사 채용 및 계약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의 장이 계약형 지역 의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계약 기간
2. 복무 지역 및 의료기관
3. 보수 및 근무조건
4. 그 밖에 채용 및 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을 포함하여 계약형 지역 의사의 채용 및 계약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역 의사에 대한 지원 중단 사유) 법 제13조제4호에서 “휴직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이나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통틀어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
2. 육아·질병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 중단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7조(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역의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 인력을 둘 것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상담실을 갖추어 것
3. 실험·실습 설비 등 지역의사 양성에 필요한 교육시설·장비를 확보할 것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시행할 것
 - 가. 운영방침
 - 나. 업무분장
 - 다. 운영시간
 - 라. 업무 수행 방법 및 기준
 - 마. 재무·회계 관련 자료의 작성 및 관리
 - 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센터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실

시하거나 실시하였던 대학에 한한다), 의료기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의사가 복무 중이거나 복무하였던 기관에 한한다) 및 관계법인·
단체·기관 등에게 자료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보고
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 및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운
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지역의사지원센터의 종류와 기능) ① 지역센터는 중앙지역의사센
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와 권역별 지역의사센터(이하 “권역지
원센터”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권역지원센터는 영 별표1에 따른 의과대학 소재지 구분을 고려하
여 필요한 지역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권역지원센터 업무조정 및 협력 지원
2. 지역의사 표준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권역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그 밖에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의사 지원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권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사의 진로 및 경력개발을 위한 사항
2. 지역의사의 직무교육 및 국내·외 연수 프로그램 지원
3. 지역의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4. 지역의사의 권익보호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제시
5. 지역의사가 의무복무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류 및 범위 등에 대한 의견제시
6. 지역 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지역 의사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진로상담 및 교육
7. 그 밖에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 의사 지원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지원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자료제출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역 의사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복무기간 또는 계약기간(그 복무 또는 계약의 시작일 및 종료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의 계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 의사의 근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자료

② 복무형 지역 의사는 법 제1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상황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

호 서식의 지역의사 근무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정명령의 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법 위반 사항
2. 시정명령의 이유 및 내용
3. 시정명령의 이행 기한
4.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법 위반사항 및 시정명령의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명령을 이행했을 때에는 그 이행 내용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면허정지 등의 기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허 자격의 정지 및 면허 취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면허 자격정지 및 취소 기준(제11조 관련)

1. 공통기준

가. 동시에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면허취소인 경우에는 면허취소를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면허정지와 면허정지인 경우에는 그 중 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각각 더하여 처분한다.

나. 행정처분기관은 의료관계법령의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규칙에서 정하는 행정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의 감경기준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1)·2)의 위반행위가 다음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감경할 수 없다.

감경대상	면허 자격정지·취소	
	면허취소	면허정지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
3) 의료인이 국민의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훈법」 또는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훈장, 포장 또는 표창을 받고, 위반행위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수여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위반행위가 여러 날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최초로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경우 나) 대통령 표창 또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경우 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범위에서 감경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1범위에서 감경
---	---

다.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끝나기 전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그 중 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라. 면허정지 일수를 산정하는 경우 그 소수점 이하의 기간은 버린다.

2. 개별 기준

위반사항	면허 자격정지·취소
1. 법 제16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법 제9조를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없이 의무복무지역을 변경한 경우	면허정지 3개월
나. 법 제1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복무지역이 아닌 지역의 의료기관이나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면허정지 3개월
다.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할 시·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 의사 근무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보고한 자	면허정지 1개월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사 면허 자격정지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면허 취소
3.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면허 취소

의무복무지역 변경 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면허번호		배치지역	
근무기관		근무기간	
변경 신청 지역			
변경사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무복무지역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지역의사 근무 상황 보고서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문)			
주소				
면허번호				
복무상황				
기간		근무지역 및 기관	근무상황	비고
부터	까지			
(그 밖의 특기사항)				